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10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정을호 · 김문수 · 민병덕
박홍배 · 조승래 · 강경숙
이병진 · 홍기원 · 서미화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구입한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구매한 교육용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서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고, 구입한 토지를 장기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이용계획 등을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용 토지가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교육용 토지에 관한 보고 등)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2. 교육용 토지의 이용계획
3. 제2호에 따른 이용계획의 이행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의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학교법인에 교육용 토지의 매각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용 토지 가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관할청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관할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용 토지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토지에 관한 보고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
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2(교육용 토지에 관한 보고 등)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u> <u>1.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u> <u>2. 교육용 토지의 이용계획</u> <u>3. 제2호에 따른 이용계획의 이행 현황</u> <u>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의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학교법인에 교육용 토지의 매각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 설>

제43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용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관할청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관할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

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